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87

발의연월일: 2020. 8. 14.

발 의 자: 장경태·백혜련·이용빈

권칠승·최혜영·김진표

이 재정 • 이수진(॥) • 황운하

문정복 · 정청래 · 이수진

윤미향 · 최기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정보원 산하에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어 「청년 기본법」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프로그 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한국잡월드 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

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중 "청소년 등"을 "청소년 및 청년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①
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청소년 등</u> 에 대한 직업교육	3. <u>청소년 및 청년 등</u>
프로그램 개설・운영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